

---

# 상권 투어 프로그램 연계 할인쿠폰 지원사업 과업지시서

---

# || 목 차 ||

I. 과업개요	
1. 과업명 .....	1
2. 과업기간 .....	1
3. 과업금액 .....	1
4. 추진방향 .....	1
5. 계약방법 .....	1
II. 과업의 범위	
1. 과업범위 .....	1
2. 과업내용 .....	1
III 성과품 납품	
1. 보고서 .....	3
IV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	
1. 일반사항 .....	4
2. 착수계 제출 .....	5
3. 과업수행 보고 .....	6
4. 보안대책 .....	6
5. 하도급의 범위 .....	7
6. 과업수행 보고 .....	7
7. 과업변경 조건 .....	7
8. 과업수행사의 책임 .....	8
9. 저작권 .....	9
10. 계약의해지 .....	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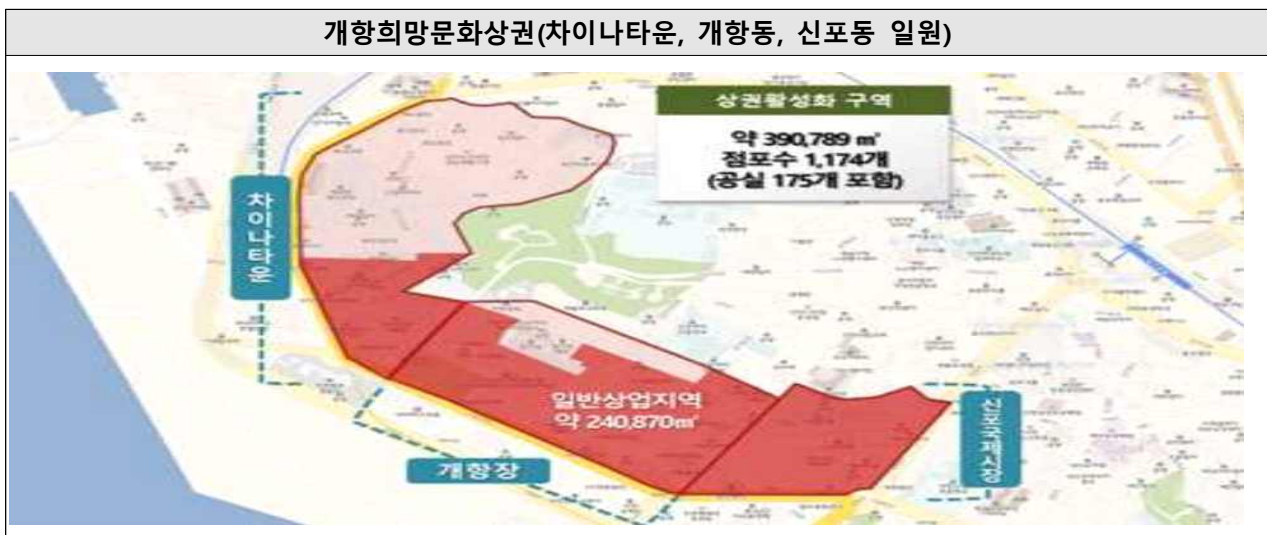
# 상권 투어 프로그램 연계 할인쿠폰 지원사업 과업지시서

## 1 과업개요

- 과업명: 상권투어 프로그램 연계 할인쿠폰 지원사업
- 과업기간: 착수일로부터 ~ 2024년 11월 25일까지
- 과업금액: 금97,900,000원(금구천칠백구십만원 / 부가가치세 포함)
- 추진방향
  - 관광객의 상권 내 체류시간 증대를 위한 할인쿠폰 제공, 이벤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계약방법: 협상에 의한 계약※공동수급(공동이행)불가

## 2 과업의 범위

- 과업 범위



- 과업 내용
  - 민간 플랫폼(관광기반)을 활용한 상권투어 프로그램과 연계한 할인쿠폰지원
  - 가맹점 모집 및 관리

- 카카오톡 채널 및 홍보 채널을 통한 참여 가맹점 모집 공고
- 개항희망문화상권내 위치한 50개이상의 가맹점(카페/식당, 체험 등) 모집
- 모집 홍보 시 광고시안 및 이미지 제작
- 모집 선정 기준 수립, 공모, 평가 절차를 통한 공정한 업체 선정 및 관리
- 참여 상권 및 상점 홍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데이터 관리
- 참여 신청, 이벤트 관련 고객센터 운영 및 불편사항 실시간 대응
- 참여 가맹점 대상 공동 CS 대응 매뉴얼 제작 및 교육실시
- 월별 CS 통계 관리 및 운영 보고서 제출
- 원활한 운영을 위한 모집 기준, 연장 영업시간, 관리, 소통 방안 제시
- 쿠폰 이벤트 운영
  - 행사 참여 관광객 대상 민간 플랫폼 앱을 활용한 모바일쿠폰 지급
  - 쿠폰 이벤트 참여 가맹점 대상 이벤트 관련 사항 안내
  - 행사 운영에 따른 현장 민원 대응

### 2024년 연간 행사 일정(안)

사업명	지급방법	기간
인천개항 미니아행	이벤트성 지급	9월~10월
개항in싸 사운드 바운드 축제	이벤트성 지급	9월~10월
개항차 타고 즐기는 버스킹공연	이벤트성 지급	9월~10월
개항 카페거리 커피페스티벌	이벤트성 지급	9월~10월
대불호텔커피체험프로그램	이벤트성 지급	9월~10월
누들플랫폼 체험프로그램	프로그램 참여자	8월~11월
기타 개항희망문화상권 투어프로그램 및 이벤트	이벤트성 지급 (온누리상품권)	8월~12월

**※ 행사일정은 변동될수 있음**

- 교육프로그램 등 단위 사업 참여와, 미션 완료자에게 모바일 할인쿠폰 또는 온누리상품권 제공
  - 상권 관련 설문조사 참여자 등 상권 이용 고객에게 모바일 쿠폰 및

## 온누리상품권 제공

① 온누리 상품권 액면가 기준 1만원

② 모바일 할인쿠폰 5천원

③ 증빙자료 및 물품지급대장 서명 확인

- 할인쿠폰 비용은 용역비 내 60,000,000원으로 편성하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

○ 모바일 쿠폰비 정산

- 쿠폰비용 운영계획 수립 및 수시 관리·월별 정산

- 모바일 쿠폰 비용은 상권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 기준으로 실비정산  
(과업 종료시 정산내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)

※ 쿠폰 비용 항목 잔액 발생 시 변경 계약을 통하여 환수 예정

○ 행사 종료시마다 사용자 대상 고객 만족도 조사

○ 이벤트 관련 온라인,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및 배포(포스터, X배너, 전단지 등)

- 관내 주요 거점 홍보물 게재를 통한 홍보실시

-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축제 및 행사 공동 홍보부스를 이용한 홍보실시

- 관광객 대상 쿠폰 사용처 안내를 위한 가맹점 포식 제작 및 설치

## 3 성과품 납품

□ 보고서

○ 각종 조사 자료는 보고서의 항목에 포함하여 수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양이 과대하여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작성한다.

○ 자문내용, 각종 업무협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부록에 수록한다.

○ 납품 및 인쇄

- 모든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

인쇄는 감독원의 사전검토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.

-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용한 모든 분석 자료 및 결과물은 외장하드 디스크 저장 장치에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제출서류

항 목	제출목적	규격	부수	제출일
1. 착수계	승인용	A4	2	계약후 7일 이내
2. 과업수행계획서	승인용	A4	2	계약후 20일 이내
3. 최종보고자료	최종보고용	A4	5	최종보고 시 제출
4. 최종보고자료 및 원본파일	최종보고용	USB	1	최종보고 시 제출

## 4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

### 1. 일반사항

- 과업 수행사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.
-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,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해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.
- 과업지시서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과 과업 수행사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과업 수행사는 참여연구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,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은 참여연구원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과업 수행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.
-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결과물을 완료일까지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에 제출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
-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요구에 따라 과업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-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은 과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과업 수행사에게 사업비 집행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 수행사는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.

## 2. 착수계 제출

- 과업 수행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과업내용서는 향후 과업 수행의 점검 기본 자료로서 사용된다.
  - 착수계
  - 과업수행 방향과 방법 및 적용자료 수집방안
  - 과업의 내용 및 세부 과업 수행계획(예정공정표 포함)
  - 참여인력 명단, 참여자 이력사항 제출
  - 인력투입 계획서
  - 용역 수행 인력은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함
  -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발주처가 교체 요구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
  - 과업수행기관이 과업 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시 신·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, 과업수행과 보안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 필수
  - 보안각서 및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
-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과업 수행사는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서 부과하는 세금, 수수료, 부과금 등 일체를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

하여야 함.

### 3. 과업수행보고

- 보고는 다음과 같이 실시하되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할 수 있다.
- 과업 수행사는 보고, 협의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용역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야 하며, 양자 간 이견이 있을시에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#### 가. 착수보고

-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이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할 시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한다.

#### 나. 수시보고

- 과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월 1회 중간 보고를 통해 책임연구원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직접 보고한다.
  - 주요계획(안)
  - 발주기관으로부터 관련 사항의 자료 제출 및 보고
  - 기타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한 자료 등

#### 다. 최종보고

-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 5부를 완료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함.

### 4. 보안대책

- 과업 수행사는 과업 내용을 과업 이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,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외부에



유출 및 반출할 수 없다.

- 과업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과업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,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.
-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,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완관리는 과업 수행사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른다.
-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사가 진다.

## 5. 하도급의 범위

- 과업 수행사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.
- 다만 과업 성격상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의뢰 할 수 있다. 이 경우 과업 수행사는 하도급 범위·내용 등에 대하여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.

## 6. 통계 및 기타 자료의 적용

- 통계자료의 적용은 통계청 통계자료, 정부기관 통계자료, 인천시 통계자료,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순위로 활용하되 최근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고 반드시 자료의 인용과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.
- 각종 자료의 조사, 분석은 통계자료 및 문헌의 활용,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한다.

## 7. 과업변경 조건

- 과업 수행 중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요구에 의해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 수행사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- 다음의 경우 과업 수행사는 과업 내용을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  - 과업 업무량의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발생한 경우
  - 관련법령·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한 경우
 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에 따른 업무수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
- 위 항에 대한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되, 과업 완료 후에도 과다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.

## 8. 과업수행사의 책임

-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검토,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, 과오,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과업 수행사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.
- 과업 수행사는 과업 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의 수정,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사 부담으로 시정 조치 하여야 한다.
- 과업 수행사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해 민·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과업 수행사는 본 과업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## 9. 저작권

- 과업 수행과정에서의 생산물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이 소유하며, 정책상 필요시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.

## 10. 계약의 해지

-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과업 수행사는 (재)인천중구문화재단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·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다.
  - 본 계약과 관련한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
  - 과업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 등 계약기간 내 과업 내용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, 과업 수행계획서와 예정 공정표에 의한 과업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때
  -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